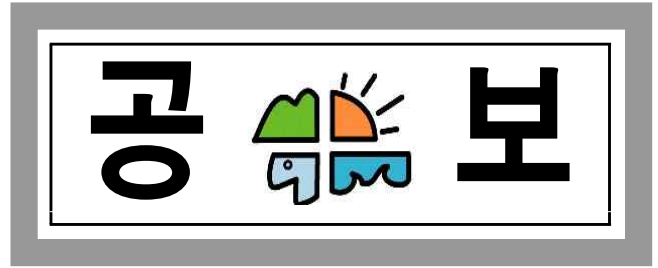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00호 2012년 5월 10일(목)

규 칙

○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 2

회 랑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2012년 5월 10일

속초시규칙 제1286호

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출연금 등 처리방법)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14조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 제10조(금고의 중도해지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제11조(금고운용 보고) ① (생략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생략) 제12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~ 이하 생략~ 제13조(운영규정) 이 규칙에서 ~ 이하생략 ~	제10조(출연금등 처리방법)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제11조(금고의 중도해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금고운용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 제13조(실비보상)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운영규정) (현행과 같음)